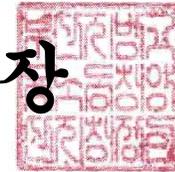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처분통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3년 재참여 제한결정 안내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5. 23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이○규	01.01.2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결정	-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연속 3회 미제출 (4~6회차) -출석통지 2회 불응 및 연락두절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취업지원종료(중단) 결정통보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	경남 김해시 인제로 11번길 48-15 (이하생략)

- 공고기간: 2024. 5. 24. ~ 2024. 6. 7.(15일간)
- 기타사항은 김해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김미화(Tel. 055-330-95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